

질병관리본부

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해외유입 홍역사례 조기발견 및 병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·관리 강화 요청

1. 관련 근거

가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41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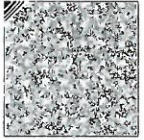
나. 2018년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지침

2.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 받은 후 인증 상태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, 퇴치 이후에는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사례로 인한 소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3. 그러나 최근 학교 및 의료기관에서 해외유입 사례로 인한 홍역 유행*이 발생한 바 있어 홍역 의심 환자 조기발견 및 병원 내 감염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귀 기관·학회의 회원 또는 의료기관에 붙임 내용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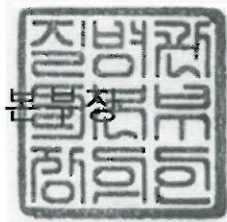
* (6.11.기준) 확진 환자: 총 8명(서울 소재 학교 3명, 경기 소재 의료기관 5명)

붙임: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및 병원감염관리 주의 당부! 1부. 끝.



질병관리본부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학회장



보건연구사 인혜경 보건사무관 이채진 감염병감시과 전결 2018. 6. 12. 장 박혜경

협조자

시행 감염병감시과-1364 (2018. 6. 12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 질병관리본부 / http://cdc.go.kr
부 감염병감시과

전화번호 043-719-7167 팩스번호 043-719-7188 / totoro0609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